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**인천지방검찰청**  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정지영  
전화 032-860-4340

**보도자료**  
2024. 9. 10.(화)

**제목** **전국적으로 먹튀주유소 7개를 운영·매매한 일당 11명 기소**  
-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 자백하게 한 총책 등 5명 구속 기소, 6명 불구속 기소-

**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**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인천지검 **공정거래·조세범죄전담부(부장검사 용태호)**는 소위 '**먹튀주유소**' 사건을 1년간 수사하여 139억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를 매입, 판매한 먹튀주유소 7개소 운영·매매 조직의 **총책**, 바지사장 및 바지사장 알선 **브로커** 등 5명을 '23. 10.~'24. 7. 4회에 걸쳐 구속 기소하고, 오늘(9. 10) 바지사장, 석유 판매업자, 먹튀주유소 매수·운영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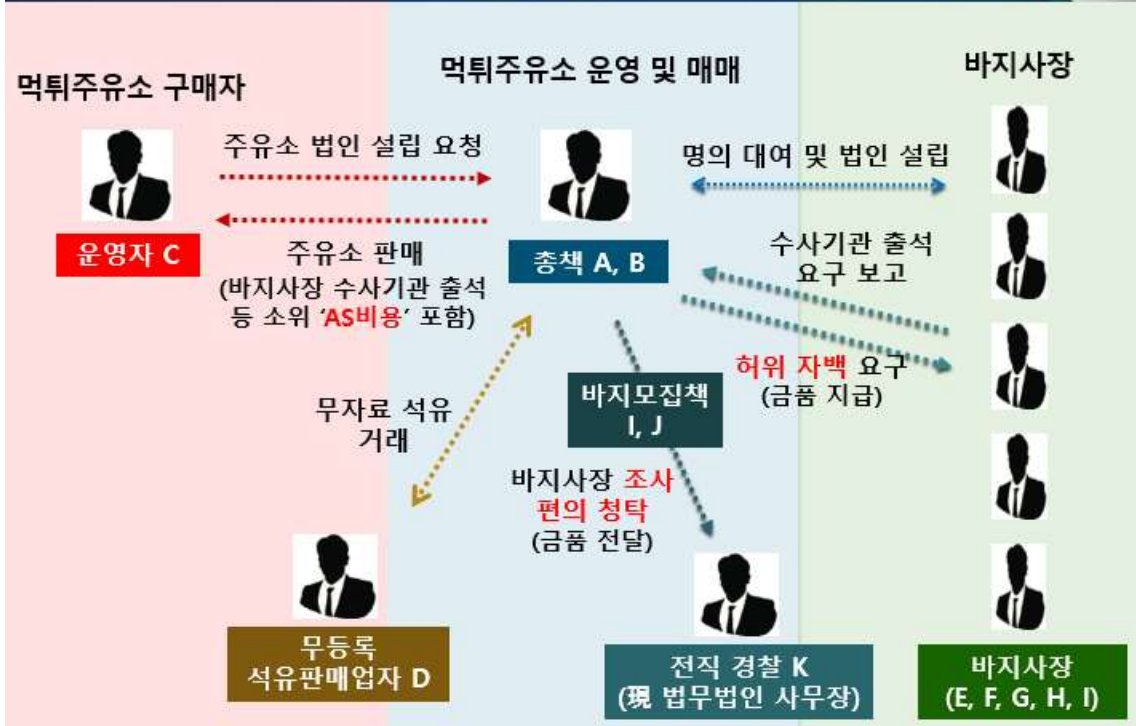
\* 먹튀주유소 : 단기간에 무자료 유류를 판매 후 폐업하여 부가세·소득세를 포탈하는 주유소

- 경찰은 '23. 9. 실운영자로 허위 자백한 주유소 바지사장 1명만 피의자로 송치 하였으나, 검찰은 총책의 주거지·사무실 압수수색 등 전면적인 직접 수사를 통해 배후에 있는 전국적 규모의 먹튀주유소 전문 매매 조직을 적발하였습니다.
- 총책 2명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먹튀주유소들을 운영하거나, 이를 원하는 매수인이 있는 경우 조직적으로 바지사장을 모집하고 법인을 설립하여, 그 법인과 함께 먹튀주유소를 매도하였습니다.
- 또한 위 총책들은 단속시 바지사장을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자백하는 역할(속칭 '앞바지')을 하게 하고, 앞바지가 거부할 경우 2차로 실운영자를 자처할 사람(속칭 '뒷바지')을 내세워 범행을 반복했으며, 경찰 조사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**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네기도**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-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, 앞으로도 조세행정의 건전성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.

# I

##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### 범행 구조도



### ● 먹튀주유소 운영 및 매매 조직 총책

- (A, B) '21. 2.~'23. 6.경 인천, 용인 등에서 **합계 81억원 상당의 석유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단기간 판매 후 폐업** [조세범처벌법위반, 석유사업법위반 등]
- (A, B) '23. 5.~12.경 바지사장 명의로 설립한 법인들을 다른 먹튀주유소 운영자 C에게 개당 4천만원 상당에 매도하여 **합계 58억원 상당의 석유를 무자료로 공급받아 판매하게 함** [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, 석유사업법위반방조 등]
- (A, B) '21. 6.~'24. 4.경 바지사장들로 하여금 **총 7회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먹튀주유소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하고 금품을 제공** [범인도피교사, 위계공무집행방해]

### ● 먹튀주유소 구매자 및 무등록 석유판매업자

- (C) '23. 5.~12.경까지 군산, 논산 등 주유소에서 **합계 58억원 상당의 석유를 무자료로 공급받아 판매 후 폐업** [조세범처벌법위반, 석유사업법위반]
- (D) '23. 1.~5.경까지 먹튀주유소를 운영하는 A에게 **18억원 상당의 석유를 무자료로 공급** [석유사업법위반]

## ● **바지사장 및 모집책**

- (E, F, G, H, I) '21. 6.~'24. 4.경 무자료주유소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총 7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하고 금품을 수수 [범인도피]
- (I, J) '23. 6.~7. 수사기관에 대신 출석할 바지사장 E, F를 알선 [범인도피]
- (I, J) '23. 6.경 A, B의 요청으로 E의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전직 경찰인 법무법인 사무장 K에게 담당 경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00만원을 공여 [변호사법위반]

## ● **전직 경찰 출신 사건 브로커**

- (K) 전직 경찰(경감)인 법무법인 사무장으로서, 23. 6.경 J로부터 E의 조사 담당 경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00만원을 수수 [변호사법위반]

## II 수사 경과

- '23. 9. 경찰, 허위 자백한 바지사장 E 석유사업법위반 사건 송치  
- 검찰, 보완수사요구(실운영자 재확인 취지)
- '23. 10.~12. 경찰, 보완수사하여 E와 모집책 J를 범인도피로 구속 송치  
- 검찰, 구속 기소
- '23. 12. 검찰, J가 전직 경찰 K에게 E의 조사 편의를 청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 확인하여 변호사법위반 인지 및 기소
- '24. 12.~1. 총책 A에 대한 경찰 신청 구속영장 법원 기각 및 불구속 송치
- '24. 2.~5. 검찰, A와 관련된 전국 먹튀주유소 사건 이송 요청
- '24. 5. 검찰, 바지사장 F 휴대전화 압수, 직접 구속하여 기소
- '24. 6. 검찰, 모집책 I 휴대전화 압수, 직접 구속하여 기소
- '24. 7. 검찰, 총책 A 주거지·사무실 압수수색, 직접 구속하여 기소
- '24. 8.~9. 검찰, 총책 B·먹튀주유소 매수인·석유판매업자 등 5명 인지  
- 법원은 총책 B에 대한 구속영장을 2회 기각
- '24. 9. 10. 검찰, B 등 6명 불구속 기소

### Ⅲ

## 수사 결과 및 의의

### 1. 경찰이 바지사장만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여 배후 조직의 전모를 규명

- 경찰은 거짓 자백을 기초로 바지사장만 피의자로 송치하였으나, 검찰은 실 운영자를 재확인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요구하고, 그 결과 확인된 실운영자에 대해 검찰에서 총책의 주거지·사무실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를 진행하여 배후에 있는 전국적인 먹튀주유소 운영·매매 조직과 그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였습니다.

### 2. 먹튀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조직적·계획적으로 사법기능을 훼손한 범죄자들 엄단

- (범행 수법) 피고인들은 조세포탈 범행이 적발되더라도 동종 전과가 없고 포탈세액이 크지 않으면 통상 벌금형, 집행유예형이 선고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, 단기간에 무자료 석유를 판매하고 세금을 포탈한 채 폐업한 뒤 바지사장만 교체하는 방법으로 먹튀주유소를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.
- (주유소 매매와 범인도피) 나아가 다른 먹튀주유소 운영자에게 유령법인까지 매도할 경우 범행이 발각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, 다수의 먹튀주유소 법인을 팔고, ① 명의상 대표인 바지사장(앞바지)이 실운영자인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게 하고, ② 앞바지가 불응하면 브로커를 통해 대신 처벌받을 사람(뒷바지)을 물색 후 조사받게 하고, ③ 수사기관이 바지사장의 자백을 의심하는 경우 최근 사망한 사람을 물색하여 사망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방식의 3중 범인도피 행각을 반복하였고, 그 과정에서 전직 경찰 출신 브로커에게 조사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까지 제공하였습니다.
- 피고인들은 약 3년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왔으나,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조직적인 범행의 배후를 밝히고 총책 등 주범들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
### Ⅳ

## 향후 계획

- 인천지검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, 향후에도 조세행정의 건전성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소위 먹튀주유소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습니다.☑

## 주요 범죄사실 요약

구분	범죄사실 요약	비고	
떡 튀 주 유 소 운 영 · 유 통	A (남, 56세)	<p><b>[떡튀주유소 운영]</b> '23. 1.~6.경 인천 소재 주유소에서 18억 원 상당의 석유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 [석유사업법위반, 조세범처벌법위반]</p> <p><b>[떡튀주유소 운영 방조]</b> '23. 7.경 C가 인천에서 떡튀주유소를 운영할 것을 알면서 유령법인 매도 [석유사업법위반방조,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]</p>	구속
	A (B와 공동범행)	<p><b>[범인도피교사, 위계공무집행방해] B와 공모하여</b></p> <p>① '23. 6.경 E로 하여금 경찰에서 인천 소재 주유소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함</p> <p>② '23. 7.~'24. 4.경 F로 하여금 특사경 및 검찰 조사에서 부산 소재 주유소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함</p> <p>③ '23. 12. I로 하여금 경찰에서 논산 소재 주유소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함</p>	
	B (남, 51세)	<p><b>[범인도피교사, 위계공무집행방해]</b></p> <p>④ '21. 6.경 G로 하여금 특사경 조사에서 용인 주유소의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함</p> <p>⑤ '23. 8.~11.경 H로 하여금 세무서 및 경찰 조사에서 인천 소재 주유소의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함</p>	
		<p><b>[떡튀주유소 운영]</b></p> <p>① '21. 2.~6.경 용인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5억 원 상당의 석유를 무자료로 공급받고, 소득세 등 세금 3억 원 상당을 포탈</p> <p>② '22. 7.경~'23. 1.경 인천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38억 원 상당의 석유를 무자료로 공급받아 [조세범처벌법위반, 석유사업법위반]</p> <p><b>[떡튀주유소 운영 방조]</b> '23. 4.경 C가 논산에서 떡튀주유소 운영할 것을 알면서 유령법인을 매도 [석유사업법위반방조,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]</p>	
범인 구매 (남, 45세)	C	<p><b>[조세범처벌법위반, 석유사업법위반]</b></p> <p>① '23. 5.~9.경까지 논산 소재 주유소에서 20억 원 상당의 석유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</p> <p>② '23. 7.~12.경까지 군산 소재 주유소에서 38억 원 상당의 석유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</p>	
석유 판매 (남, 61세)	D	<p><b>[석유사업법위반]</b> '23. 1.~5.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떡튀주유소를 운영하는 A에게 경유 및 휘발유를 무자료로 공급</p>	
바 지 사 장	E (남, 66세)	<p><b>[범인도피]</b> '23. 6.경 경찰에서 인천 소재 주유소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</p>	구속
	F (남, 58세)	<p><b>[범인도피]</b> '23. 7.~'24. 4.경 경찰·검찰에서 부산 소재 주유소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</p>	구속
	G (남, 51세)	<p><b>[범인도피]</b> '21. 6. 특사경 조사에서 용인 소재 주유소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</p>	
	H (남, 59세)	<p><b>[범인도피]</b> '23. 12.경 경찰에서 인천 소재 주유소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</p>	
브 로 커	I (남, 60세)	<p><b>[범인도피]</b> A, B의 요청으로</p> <p>① '23. 6.경 J과 함께 E를 섭외하여 경찰에서 인천 주유소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함</p> <p>② '23. 7.~'24. 4.경 F를 섭외하여 특사경 및 검찰에서 부산 소재 주유소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함</p> <p>③ '23. 12. 직접 경찰에서 논산 소재 주유소의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함</p> <p><b>[변호사법위반]</b> '23. 6.경 A, B의 요청으로 J와 함께 E의 경찰조사를 편의를 위해 전직 경찰인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100만 원을 공여하며 청탁하고, 수고비를 수수</p>	구속
	J (남, 60세)	<p><b>[범인도피]</b> '23. 6.경 A, B의 요청으로 I와 함께 E를 섭외하여 경찰에서 인천 주유소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함</p> <p><b>[변호사법위반]</b> '23. 6.경 A, B의 요청으로 I와 함께 E의 경찰조사를 편의를 위해 전직 경찰인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100만 원을 공여하며 청탁하고, 수고비를 수수</p>	구속
전직 경찰 (남, 62세)	K	<p><b>[변호사법위반]</b> 전직 경찰(경감)인 법무법인 사무장으로서 '23. 6.경 E의 수사 담당 경찰에게 조사 편의를 봐줄 것을 부탁하는 명목으로, 100만 원을 수수</p>	